

2024년도 교육공무직(교무실무사) 최종 합격자 발표 공고

2024년도 익산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최종 합격자 발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익산고등학교장

1 최종 합격자 명단: 개별통보

2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7월 12일 10시

나. 제출처: 익산고등학교 행정실

3 제출서류

가.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나. 채용건강진대체통보서 1부.(최근 2년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력 가능

-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없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다. [붙임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라. [붙임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마. [붙임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1부.

바. [붙임4] 겸업확인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파일 참고

[별임 1]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익산고등학교 ○○ 직종 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익산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익산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4년도 익산고등학교 교육공무직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조회
2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익산고등학교장과 노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됨

결격사유

- ▶ 「익산고등학교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6조(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3.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4.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자
-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익산고등학교장 귀하

겸업확인서

소속 :

직종 :

성명 :

위 본인은 익산고등학교 ()직종에 응시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1. 근무기관	
2. 직종	
3. 근무기간	
4. 담당업무	

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오며, 겸업하고 있는 업무를 위 확인서에 의거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익산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로 인정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익산고등학교장 귀하